

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

영진전문대학교(이하 '대학'이라 한다)와 회사명 : _____ (이하 '산업체'라 한다)은(는)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

제1조 목적

이 계약의 목적은 산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영진전문대학교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2조 위탁교육과정 현황

입학연도	모집단위	성명
2021학년도	계열/학과	
	계열/학과	

※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

제3조 위탁생의 지원 자격

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, 모집요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
제4조 위탁생의 선발과 입학

- ① 위탁교육대상자는 재직회사에서 추천한다.
- ② 대학은 위탁교육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-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 또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.

제5조 교육과정의 편성

-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
- 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.

제6조 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

위탁 산업체의 임직원 중 교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 교육비 및 등록

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해당 계열/학과 학생 납입금과 동일하게 하되, 산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8조 위탁교육생의 신분

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영진전문대학교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,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제9조 제적 기준 적용

위탁생은 퇴직 시 제적 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 유지 가능

-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
 -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
- ※ 위의 3개월,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함
-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산업체 위탁교육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

제10조 의무 재직

9개월 재직경력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입학하는 자는 당 산업체에서 입학일 이후부터 6개월간 의무 재직하여야 한다.

제11조 계약 기간

계약기간은 위탁교육생이 입학한 날로부터 졸업하는 날까지로 한다. 단, 위탁교육생이 퇴직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.

제12조 부칙

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모든 사항은 대학의 학칙과 통상 관례에 준한다.

대학

대학명 : 영진전문대학교

총장 : 최재영



산업체

회사명 :

대표 :

직인